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동운 영코자 하는 것으로,

나.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 하여 북구의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나목 중 일부 개정
 - ▶ “도서관”을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도서관”을 “평생학습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 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기획총무위원회</p> <p> 가. (생 략)</p> <p> 나.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u>도서관</u></p> <p>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다. (생 략)</p> <p>3. (생 략)</p> <p>③ (생 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 <u>평생</u></p> <p> <u>학습사업소</u> -----</p> <p> 다.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